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1. 18.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8. 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 제안이유

최근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출산하는 경향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이 낳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원스톱서비스) 등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상향 (안 제4조)

▶ 둘째 아(兒) 15만원 ⇨ 50만원, 셋째 아(兒) 30만원 ⇨ 100만원, 넷째 아(兒) 100만원 ⇨ 300만원

2)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로 편익 증진 (안 제5조제2항)

▶ 출산축하금 신청 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병행 사용

3) 신청 시 구비서류 정비 (안 제5조 제3항)

▶ 거주기간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송인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출산하는 경향에 따라 이에 우리구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이 낳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방법 확대 등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 넷째 아 300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안 제5조 2항은 출산축하금 신청 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병행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 안 제5조3항은 출산축하금 신청 시 거주기간 증빙서류로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구비서류를 정비하였음.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구절벽이라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수요자 중심의 출산 장려 시책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극복 동참에도 부합되는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